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. 11. 8 선고 2016가단2109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11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90m²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,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용관

별지